장학 규정(대학원)

(최종개정일 2023. 5.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각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변경 2005.8.1.)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교외의 장학기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장학금

제3조(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교내장학금
 - 가.교육조교장학금
 - 나.연구조교장학금
 - 다.우수신입생장학금
 - 라.교직원장학금
 - 마.명지글로벌장학금 (변경 2021.6.1.)
 - 바.면학장학금
 - 사.총장특별장학금
 - 아.대학원장특별장학금
 - 자.해외연수장학금
 - 차.현직교사 및 공무원 장학금
 - 카.동문장학금
 - 타.동종장학금
 - 파.학군제휴장학금
 - 하.멘토장학금
 - 거.(삭제 2021.9.1.)
 - 너.연구창업지원장학금 (신설 2016.10.1.)
 - 더. 박사학위취득준비장학금 (신설 2021.3.1.)
- 2.교외장학금
 - 가.외부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나.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다.기타 단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제 3 장 장학생 선정

- 제4조(선정) ①교내장학생은 매 학기 초에 학기단위로 선정하며,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다만, 멘토장학금은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 ②교외장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1.해당 학과와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 2.해당 학과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수혜자의 학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각 대학원장이 배정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변경 2005.8.1)
 - 3.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제5조(선정기준) 교내장학금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4 장 장학금 신청 및 지급

- 제6조(신청·절차) 교내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와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변경 2005.8.1)
 - 1.재직(학)증명서 1부 (조교장학금, 현직교사 및 공무원 장학금, 동종장 학금에 한함)
 - 2.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각 1부(교직원장학금에 한함)
 - 3.국내거류증명서 1부(명지글로벌장학금에 한함) (변경 2021.6.1.)
 - 4.졸업증명서 1부(동문장학금에 한함)
 - 5.기타 장학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 **제7조(신청자격 제한)**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제8조(수혜기간) ①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 ②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 통합과정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변경 2005.3.1, 2005.8.1)
 - ③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특수대학원은 5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변경 2004.3.2, 2007.3.1)
 - ④동일 수혜기간 내의 장학금은 1종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외장학 금, 해외연수장학금, 멘토장학금, 연구창업지원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내장학금은 상호 중복 수혜할 수 있다.(변경 2016.10.1.)
 - 1.우수신입생장학금 1종과 교육조교장학금 1종 또는 2종
 - 2.우수신입생장학금 2종과 교육조교장학금 2종
 - 3.연구조교장학금과 교육조교장학금 1종 또는 2종
 - 4.명지글로벌장학금 1종과 교육조교장학금 2종. 다만, 학부가 없는 학과에 한함.(변경 2004.7.1, 2006.9.1, 2007.6.1., 2008.6.1., 2014.10.1., 2021.6.1.)
- 제9조(지급시기) ①교내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초에 지급한다.
 - ②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시기에 지급한다.

- 제10조(지급방법) ①교내장학금은 해당금액의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연수장학금 및 멘토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08.6.1., 2014.10.1)
 - ②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제11조(지급중지·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변경 2009.7.1)
 - 1.학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 2.장학금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3.자퇴 또는 제적이 될 경우
 - 4.조교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휴학할 경우
 - 5.명지글로벌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추천권자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부적격 판정이 있는 경우(변경 2021.6.1.)
-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변경 2005.8.1)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조교장학금 및 우수신입생장학금은 200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장학시행규칙 및 특수대학원장학규정은 폐 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교내장학금 선정기준 중 대학원 외국인장학금의 경우 2008년 2월 28일까지 재적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교직원장학금 변경내용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관동대학교 교직원과 직계자녀에게는 종전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외국인장학금 변경내용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제적생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내장학금 선정기준 (변경 2005.8.1, 2005.9.1, 2006.9.1, 2007.3.1, 2007.6.1, 2008.3.1, 2008.6.1, 2008.12.1, 2009.7.1, 2011.3.1., 2012.7.1., 2012.9.1., 2013.9.1., 2014.10.1., 2014.11.1., 2015.11.1., 2016.10.1., 2019.6.1., 2021.1.1., 2021.3.1., 2021.6.1., 2021.9.1., 2023.5.1.)

1. 대학원

장학 종별	수 혜 자 격 기 준	지 급 액	추천자
교육 조교 장학금	1종 : 우리 대학교 행정부서 및 소속 학부 (과)에서 강의 및 실험실습보조, 교육용 기자 재 관리, 학생생활지도 등 제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 2종 : 전임교수의 연구 및 강의보조 또는 행정부서의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자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연구 조교 장학금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연구실적을 기한 내에 제출 하는 자	등록금 50%(석사, 박사4학기 석박사통합 6학기)	지도교수
우 수 신입생 장학금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석사, 박사과정(4학기) 석박사통합과정(6학기)	지도교수 대학원장
교직원	1종 1. 우리 대학교 교직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계약직원 제외) 2.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직원 및 직계자녀 3. 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로 전출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4.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파면 또는 해임 제외) 또는 면직한 교직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5.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직원의 배우자및 직계자녀(계약직원 제외) 2종 1.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사업체 및 명지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대학교 교회, 배움의 교회 재직자와 직계자녀다만, 1종 또는 2종의 대상자는 직전학기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이어야 한다.	1종 : 등록금 100%	대학원장

장학 종별	수 혜 자 격 기 준	지 급 액	추천자
명지 글로벌 장학금	1종 1. 국내외 정부에서 추천한 외국인 학생 2. 외국의 대학 총(학)장이 추천한 외국인 학생 3. 삭제(2021.6.1.) 4.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추천한 외국인 학생 5. 전임교원이 연구목적으로 추천하여 선발된 외국인 학생 중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4.0이상 자	1종 : 등록금 100%	국제교류처장 지도교수
	2종 1. 언어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입학학기) 가. 한국어트랙학과 : 한국어(TOPIK) 5급 이상 나. 영어트랙학과 : IELTS 7 level 이상 2. 1종 수혜자격 심사결과 2종으로 선발된 자 (입학학기) 3. 언어능력우수재(TOPIK(4급) 또는 IELTS(6)이상]이며	2종 : 등록급 50%	대학원장 국제교류처장
	직전학기 성적이 4.2이상인 외국인 학생(재학학기) 3종 1. 언어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입학학기) 가. 한국어트랙학과 : 한국어(TOPIK) 4급 나. 영어트랙학과 : IELTS 6 level	3종 : 등록금 30%	대학원장 국제교류처장
	 1종 수혜자격 심사결과 3종으로 선발된 자(입학학기) 직전학기 성적이 4.0이상인 외국인 학생(재학학기) 4종 1종, 2종, 3종 대상자 이외의 외국인 학생(입학학기) 직전학기 성적이 3.5이상인 외국인 학생(재학학기) 	4종 : 등록금 20%	대학원장 국제교류처장
면학 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대학원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	1종 : 등록급 50% 2종 : 등록급 30%	대학원장
총장 특별 장학금	품행이 타 학생에 모범이 되고, 대학원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1종 : 등록금 100%입학금 포함 2종 : 등록금 60% 3종 : 등록금 30%	대학원장
해외 연수 장학금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 이상이며, 해외연수를 위한 소정의 과정을 통하여 선발 된 자	1종 : 1,500,000원 2종 : 1,000,000원 3종 : 700,000원 4종 : 500,000원	대학원장
공무원 (군인포함) 장학금	공무원(군인포함)으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함)	1종 : 등록금 60% 2종 : 등록금 40% 3종 : 등록금 20%	대학원장
멘토 장학금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학부생의 학습지도를 수행하는 자	해당부서 기준에 따름	해당부서장
연구 창업지원 장학금	창업교육센터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와 결합된 기술창업을 하였거나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원 별도 기준에 따름	대학원장, 해당부서장
	1.2	1종 : 등록금 100%	
박사학 위취득 준비장 학금	1종 5학기 이상의 박사과정 및 7학기 이상의 통합과정학생 중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고 수강학점이 없는 학생 2종 5학기 이상의 박사과정 및 7학기 이상의 통합과정학생 중 수강학점이 4학점 미만인 학생	2종 : 등록금 50%	대학원장
대 학원 장특별 장학금	품행이 타 학생에 모범이 되고, 대학원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등록금 80%	대학원장

^{*} 총장특별장학금 1종 및 교직원장학금 1종은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 * 교육조교장학금, 면학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은 학비조달이 어려운 가계곤란자를 우선 선발하여 지급한다.
- * 명지글로벌장학금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학생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만 지급한다.

2.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변경 2007.3.1, 2007.6.1, 2009.7.1, 2010.1.1, 2010.6.1, 2012.7.1., 2012.9.1., 2013.9.1., 2014.10.1., 2014.11.1., 2019.6.1., 2021.1.1., 2021.3.1., 2021.6.1., 2023.5.1.)

장학종별	수 혜 자 격 기 준	지 급 액	추천자
교육 조교 장학금	1종 : 우리 대학교 행정부서 및 소속 학부 (과)에서 강의 및 실험실습보조, 교육용 기 자재 관리, 학생생활지도 등 제반 보조업무 를 수행하는 자 2종 : 전임교수의 연구 및 강의보조 또는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직원 장학금	행정부서의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자 1종 1. 우리 대학교 교직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계약직원 제외) 2.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직원 및 직계자녀 3. 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학교 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로 전출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4.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파면 또는 해임 제외) 또는 면직한 교직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5.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계약직원 제외) 2종 1.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사업체 및 명지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내후교 교회, 배움의 교회 재직자와 직계자녀 2. 우리 대학교 계약직원(특수대학원에 한함) 다만, 1종 또는 2종의 대상자는 직전학기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이어야 한다.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대학원장
	1종 1. 국내외 정부에서 추천한 외국인 학생 2. 외국의 대학 총(학)장이 추천한 외국인 학생 3. 삭제(2021.6.1.) 4.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추천한 외국인 학생 5. 전임교원이 연구목적으로 추천하여 선발된 외국인 학생 중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재학생의	1종 : 등록급 100%	국제교류처장 지도교수
명지 글로벌 장학금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4.0이상 자 2종 1. 언어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입학학기) 가. 한국어트랙학과: 한국어(TOPIK) 5급 이상 나. 영어트랙학과: IELTS 7 level 이상 2. 1종 수혜자격 심사결과 2종으로 선발된 자 (입 학학기) 3. 언어능력우수자[TOPIK(4급) 또는 IELTS(6)이상]이 며 직전학기 성적이 4.2이상인 외국인 학생(재학학	2종 : 등록금 50%	대학원장 국제교류처장
	기) 3종 1. 언어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입학학기) 가. 한국어트랙학과 : 한국어(TOPIK) 4급 나. 영어트랙학과 : IELTS 6 level 2. 1종 수혜자격 심사결과 3종으로 선발된 자(입학학기) 3. 직전학기 성적이 4.0이상인 외국인 학생(재학학기) 4종	3종 : 등록급 30% 4종 : 등록금 20%	대학원장 국제교류처장 대학원장 국제교류처장
	1. 1종, 2종, 3종 대상자 이외의 외국인 학생(입학학기) 2. 직전학기 성적이 3.5이상인 외국인 학생(재학학기)		

장학종별	수 혜 자 격 기 준	지 급 액	추천자
총장특별 장학금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3종 : 등록금 40%	대학원장
대학원장 특별 장학금	우리 대학교 또는 대학원 발전 및 학생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중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종 : 등록금 60% 2종 : 등록금 30% 3종 : 등록금 20%	대학원장
현직교사 및 공무원 장학금	초, 중, 고등학교 현직교사 또는 공무원(군인 포함)으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해당 연금 가입자에 한함)	등록금 20%	대학원장
동 문 장학금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등록금 20%	대학원장
동 종 장학금	학과와 관련 있는 동일 업종 종사자로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다만,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금 20%	대학원장
학군제휴 장학금	학군협약에 의거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현역군인	등록금 50%	대학원장
멘토 장학금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학부생의 학습지 도를 수행하는 자	해당부서 기준에 따름	해당부서장
박사학위 취득준비 장학금	1종 5학기 이상의 박사과정 학생 중 졸업에 필요 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고 수강학점이 없는 학생 2종 5학기 이상의 박사과정 학생 중 수강학점이 4학점 미만인 학생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대학원장

- * 총장특별장학금 1종 및 교직원장학금 1종은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 * 교육조교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대학원장특별장학금, 동종장학금은 학비조달이 어려운 가계곤란자를 우선 선발하여 지급한다.
- * 명지글로벌장학금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학생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만 지급한다.